

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02. 28(월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3. 22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3. 23(수) 제12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5.3.23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환경복지과장 허해성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해 평창군이 설치·관리하는 동 시설안에 자판기 및 매점허가를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하여 평창군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
- 현재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으나 실적이 부진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의 장애인 우선허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공공시설내에 사무용품 및 또는 신문 등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시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(안 제1조)
- 위탁시 1개월전에 군보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공고(안 제3조)

-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이상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(안 제4조)
- 시설관리자는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하며, 다만,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(안 제5조)
-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 (안 제6조)
- 제6조의 규정위반 및 계약자가 사망한 때, 시설관리자의 승인없이 양도·양수하였을 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설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(안 제7조)
- 징수기준 방법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며, 허가기간은 1년 으로 하고 연장 허가가능 (안 제8조)
- 이 조례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기간까지 그 효력 인정함 (부칙 ②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규정에 의거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평창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·운영에 장애인을 우대하고자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, 장애인 자활과 관련하여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 본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그리고 직접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군이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

-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과 구비서류,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, 계약자의 의무,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및 허가기간을 평창군공유재산관리 조례와 1년으로 각각 규정하는 내용입니다.
-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장애인 우선시책을 솔선 추진하는 내용인 만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참여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,
 -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